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1월 09일

청구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송 *란	송 *란 1958-06-30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4길 (신당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1-09
이 *영	이 *영 1999-12-17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8길 (신당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1-09